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4 . 6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4.26.
- 다. 상정일자 : 1999. 4.26 제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도시계획세(군세, 목적세)는 자치단체장이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고시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평창읍,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의 도시계획결장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 지역으로 고시

4. 검 토 결 과

■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하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이 '95. 12.6일자로 개정되었으며,

-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고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평창군세조례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 도시계획구역 면적 22.75km²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지방세법에 의한 관련법 개정 즉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되어야 했음에도 관련법에 의한 의결은 물론 고시도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행정착오가 발생한 사례로 다시는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한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강원도내 시군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시군이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음.